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성 북 구
(감사담당관)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의안 번호	280
----------	-----

제출년월 : 2024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1) 구성인원 및 임기: 3명 / 2년 (1회 한정 연임 가능)

※ 위촉일 : 2022. 05. 26.

2) 운영형태 : 독임제 + 합의제

3) 운영방법 : 주 3회 순환근무 (1일 1명, 3시간)

가. 주요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 행사

다. 운영보고서 : 별첨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고충민원의 개념, 직무 및 권한 등)

2) 옴부즈만 운영 성과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민원처리 : 22건 (의견표명 2건, 기각/각하/종결 3건, 부서이첩 17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옴부즈만 운영 보고 관련 규정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